

평창군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213
----------	-----

제출년월일 : 2023. 11.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한강수계 수질개선과 관련된 지역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위해 건설되는 평창군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의 관리위탁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 칙(안 제1조 ~ 3조)

목적, 위치, 용어의 정의

나. 운영 및 관리(안 제4조 ~ 제12조)

운영, 위탁 절차, 위탁기간, 위탁료 및 사용료, 관리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보험 가입, 배상 책임, 관리비 등 지원

다. 시설의 이용(안 제13조 ~ 제15조)

이용료의 납부, 이용료 등의 면제, 이용 제한

라. 운영 위원회(안 제16조 ~ 제22조)

위원회 설치 구성, 위원의 임기, 의원의 의무, 위원의 위촉 해제 등,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 실비변상

마. 지도 감독 및 보칙(안 제23조 ~ 제2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3.10.11. ~ 2023.1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평창군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평창군에서 설치하는 평창군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평창군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평창군 미탄면 창리 868-1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잡곡”이란 쌀을 제외한 모든 곡물을 말한다.
2. “법인”이란 농업협동조합법 제18조 및 민법 제32조의 법인을 말한다.
3.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란 잡곡의 선별·저장·포장·규격출하·가공·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 및 이와 관련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4. “관리위탁”이란 평창군 소유의 행정재산을 법인에게 위탁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당해 재산을 운영·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① 군수는 유통센터를 직접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에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지방 출자출연법 제21조제1항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제5조(위탁 절차) ① 유통센터를 관리 위탁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관련 공고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의 경우 협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거나 관련 공고에 신청자가 있는 경우에는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탁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통센터의 보호 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관리수탁자가 제3항의 기간에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6조(관리위탁 기간) ① 일반입찰 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5년의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2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위탁 기간 만료 후 기간 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료 및 사용료) ① 수탁 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위탁료”라 한다)는 관리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는 시설 이용료, 사용료 및 기타 부대 징수료 등의 발생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가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 개선은 관리수탁자의 부담으로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된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④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유통센터의 사용료는 유통센터 평정가액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⑤ 사용료는 매년 부과하며,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날(사용 가능일)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제8조(관리 수탁자의 의무) 관리수탁자는 위탁 받은 유통센터의 운영·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위탁받은 시설물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위탁받은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연 1회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관리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그 밖의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공공의 이익 도모를 위하여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 가입) 군수는 관리수탁자에게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과 생명보험 등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배상 책임) 관리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재산에 손실·훼손·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비 등 지원) ① 위탁료는 제6조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이용료 등으로 충당한다. 단, 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관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 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 수선비
2.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전기세, 통신비 및 수도세 등의 관리유지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수리·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제3장 시설의 이용

제13조(이용료의 납부) ① 유통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수탁

자가 징수하는 이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 등의 기준은 사회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이용료 등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이용 제한) 관리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시설물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장 운영 위원회

제1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평창군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소장로 하고, 부위원장은 주무과장인 농정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산물유통과장, 축산농기계과장, 기술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고른 참여를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단, 「양성평등기본법」 제21

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평창군 농업 관련 단체에 소속된 임원

2. 농산물 가공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농식품 산업팀장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회원의 임기는 해당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과정이나 그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9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①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2. 제18조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2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관리 수탁자 선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2.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3.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군수가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21조(위원회 회의 및 의결)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실비변상)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지도·감독

제23조(지도감독) ① 관리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시설물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유통센터의 운영·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유통센터의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4조(준용규정) 유통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등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관계 법령 발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의 선별·포장·규격출하·가공·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허가 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 본문의 사용허가 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 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같다)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1. 수입

가.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입장료 등 이용료

나.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직접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가 납부하는 사용료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전대(轉貸)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다. 그 밖에 위탁재산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입

2. 지출

가.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

나.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④ 법 제2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또는 전대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⑤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계산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계산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유통센터 관리 위탁에 따른 인건비 및 관리비 지원 및 잡곡생산 면적확대로 잡곡 생산 활성화를 위한 종자대 등 예산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잡곡생산(콩) 재배농가 종자보급 및 수탁 금리지원 38,000천원

종자보급: 15,000천원(6천원/kg당×60kg/ha×83ha)× 50%

수탁 금리지원: 23,000천원 [1,100,000천원(200톤×5,500원/kg당)× 2.5%(연)×10/12월]

- 인건비 지원 : 기간제 2명 × 30,000천원(년) = 60,000천원

- 운영 관리비(전기료 등) 지원 : 연 30,000천원

※ 인건비 및 관리비는 1차년도 50%반영 및 운영수입(사용료 등)

으로 비용 충당시 미지급

나. 추계 결과

- 년 128,000천원 소요

다. 재원조달 방안

- 일반회계(자체재원 100%)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농정과 이용하
연락처	(033) 330 - 1302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세 출							
일반회계(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83,000	128,000	128,000	128,000	128,000	595,000
재원 조달		83,000	128,000	128,000	128,000	128,000	595,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83,000	128,000	128,000	128,000	128,000	595,000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비(군비)	83,000	128,000	128,000	128,000	128,000	595,00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